

강소월- 하자결의에 기초한 회사행위 효력 연구 — 사법판례를 중심으로

하자결의에 기초한 회사행위 효력 연구

-사법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Acts
-Based on Defective Resolutions: Focusing on Judicial Precedents

강소월(康晓月) (인하대학교 법학과 박사생)

KANG, Soyue(Doctoral Student, Dept. of Law, Graduate School, INHA University)

목 차

I. 서론

II. 회사 하자결의에 관한 개관

1. 개념

2. 회사 하자결의의 유형

3. 하자결의에 기초한 행위의 분류

III. 사법실무에서의 효력 인정 곤란

1. 내부행위: 사법재판에서 행위 효력에 대한 회피

2. 외부행위: 선의의 상대방 규칙 적용의 불통일

IV. 개선 경로

1. 내부행위 효력의 개선

2. 외부행위 효력의 개선

V. 결론

I. 서론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회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입법의 가치 지향에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는 현대적 기업제도의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최근에는 점차 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으로 그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회사결의 제도는 법인의 의사를 형성하는 핵심적 매개체로서, 단순히 내부 의사결정의 법정 절차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한다. 2017 년 「회사법 사법해석(4)」은 회사결의의 하자 유형을 한층 보완하여 '결의 불성립'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도입하였다. 이후 신 「회사법」 제 27 조는 이를 법률상 명시하였고, 제 28 조에서는 불성립 결의에 기초하여 회사가 상대방과 행한 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결의 불성립, 결의 취소가능, 결의 무효로 구성되는 이른바 "삼분법" 체계가 정식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회사 지배구조 실무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회사가 경영 의사결정이나 임원 변경과 같은 경영관리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내부결의를 하였으나, 해당 결의가 무효로 판단된 경우,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또한 증자나 감자와 같은 조직변경행위에 있어서 결의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회사 내부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상대방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 보호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사법실무 차원에서는 결의 하자가 후속 행위에 미치는 영향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수의 법원이 행위의 효력 판단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하자결의에 기초한 외부행위의 효력 판단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떠한 경우에 심사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통일된 기준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회사결의가 법정 제한에

강소월- 하자결의에 기초한 회사행위 효력 연구 — 사법판례를 중심으로

해당하는지 또는 정관상 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선의 판단 기준과 심사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범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의 주관적 상태는 행위 효력 판단의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상대방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회사결의를 적절히 심사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합리적인 주의의무'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사법실무에서 선의 요건의 판단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회사 하자결의에 기초한 행위의 효력 인정에 있어 사법재판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판결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서 회사 하자결의에 기초한 행위의 효력 및 그 구제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중요한 이론적·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II. 회사 하자결의에 관한 개관

1. 개념

회사 하자결의란 회사가 회의 소집 절차나 의결 방식에서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을 위반하거나, 결의 내용이 회사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에 이루어진 결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하자는 크게 절차적 하자과 내용적 하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학계에서는 하자결의에 대한 이해가 대체로 일치하며, 본 논문은 중국 「회사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광의의 개념을 채택한다. 광의의 하자결의란 결의의 실질적 또는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어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결의의 불성립, 무효 및 취소가능의 상황을 포함한다. 결의행위는 계약행위와 그 효력 구조가 상이하다. 결의행위가 독립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이유는 그 형성 방식, 효력 범위 및 기본 원리가 계약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결의의 효력은 결의에

강소월- 하자결의에 기초한 회사행위 효력 연구 — 사법판례를 중심으로

찬성한 자뿐만 아니라 반대한 자 및 기권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반면 사법 영역에서 계약행위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제 3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하자결의는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법적 정당성이 일정 정도 훼손될 수 있으며, 그 하자는 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결의 형성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어떠한 유형의 하자이든 결의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¹. 대부분의 경우 결의의 부당성으로 인해 일부 주체는 하자결의의 구속을 받음으로써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법은 주주대표소송,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양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2. 회사 하자결의의 유형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결의행위를 하나의 통일된 법률행위 유형으로 파악하고, 법률행위 효력 판단의 일반 규칙을 적용하여 결의의 효력을 평가한다. 동시에 절차적 하자과 같은 결의행위의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진행한다². 중국에서는 회사 하자결의의 효력 유형을 무효, 취소가능 및 불성립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결의 내용이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 결의의 소집 절차나 의결 방식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에 위반되거나, 결의 내용이 회사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취소가능한 결의로 본다. 또한 회사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결의 사항에 대하여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회의 출석 인원이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표결 결과가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통과 비율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¹徐银波：《法人依瑕疵决议所为行为之效力》，载《法学研究》第42卷第2期(2020)，第151页。

²王滢：《公司决议行为的双阶构造及其效力评价模式》，载《当代法学》第35卷第5期(2021)，第140页。

3. 하자결의에 기초한 행위의 분류

결의 하자의 유형을 명확히 한 이후에는, 해당 결의에 기초하여 회사가 수행한 행위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행위가 회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내부행위와 외부행위로 구분한다. 먼저, 내부행위는 회사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여 회사 내부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경영관리행위로서, 이익배분, 고위 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 일상적 경영 의사결정 등을 포함한다. 둘째는 조직변경행위로서, 회사의 합병·분할, 자본의 증감, 조직형태의 변경, 해산 및 청산 등 회사 조직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³. 이러한 행위는 주로 회사 내부 지배구조에 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외부 제 3 자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회사가 하자결의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외부행위는 결의 내용이 회사 외부 제 3 자의 권익과 관련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회사 하자결의가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제 3 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부 학자들은 이를 결의의 “외부적 파급효과”로 설명한다⁴. 외부행위는 회사가 결의에 기초하여 외부 주체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대외 담보 제공 및 지분 양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 상대방 또는 제 3 자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그 법적 효력은 회사 내부 관계뿐만 아니라 거래 안전 및 신뢰 보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와 같은 유형화는 후속 논의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차별화된 효력 인정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며, 모든 경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³丁勇：《公司决议瑕疵立法的范式转换与体系重构》，载《法学研究》第 42 卷第 3 期(2020)，第 85 页。

⁴梁上上：《公司担保合同的相对人审查义务》，载《法学》第 3 期(2013)，第 26 页。

III. 사법실무에서의 효력 인정 곤란

1. 내부행위: 사법재판에서 행위 효력에 대한 회피

사법실무에서 회사 하자결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영관리행위를 마주할 때, 법원은 종종 결의의 하자 유형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⁵, 회사 이사회가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결의를 하였고, 법원은 결의 내용 및 절차가 법률 및 회사 정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상세히 심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해당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결의를 취소가능한 하자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자결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영관리행위의 법적 효력, 예컨대 「자산경영위탁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계약이 해제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계약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본 사건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위 계약의 효력 인정 및 이행 등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본 사건의 소송 결과 역시 객관적으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 또는 해제를 확인하는 효력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최종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회피 태도의 발생은 한편으로는 경영관리행위가 통상 다수의 복잡한 거래 절차와 제 3 자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만약 행위 효력을 쉽게 판단할 경우 연쇄적인 반응을 초래하여 거래 질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이 이와 같은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충분히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 시 우려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보편적이며, 다수의 유사한 사례가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은 경영관리행위의 효력을 일종의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한다.

회사 조직변경행위에 있어서도 법원은 동일하게 효력 인정에 대한 회피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회피 현상은 회사 조직구조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⁵北京市第一中级人民法院(2024)京 01 民终 8901 号民事判决书。

강소월- 하자결의에 기초한 회사행위 효력 연구 — 사법판례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친다. 회사 조직변경은 회사의 경영 범위, 존속 기간 및 등록 자본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효력의 불확정성은 관련 업무의 정체를 초래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관련 이해관계자의 권익에도 손해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직원은 조직변경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직무 변동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권 실현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된다. 어떤 회사는 조직변경 결의의 하자로 인해 직원들이 동요하고 업무가 저해되었으며, 채권자 또한 조기 변제를 요구하여 회사에 큰 압박을 가하였다. 이는 법원이 조직변경행위의 효력 인정에서 회피하는 것이 회사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여러 불리한 영향을 초래함을 충분히 보여준다. 회사 하자결의에 기초한 조직변경행위 중 공상등기 사항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하자결의로 인해 이루어진 공상등기 변경을 무효로 본다. 예를 들어, 이모와 유모 등의 회사결의 효력 확인 분쟁 사건에서⁶, 법원은 감자행위가 무효인 경우 유모와 하모는 원래의 지분등기를 회복해야 하며, 갑 회사는 감자 이전의 등록자본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모가 갑 회사, 유모 및 하모에게 감자 및 지분변경등기의 회복을 요구한 소송청구를 법원은 지지하였고, 하자결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회사 감자 및 지분변경등기를 취소하도록 판결하였다. 또 다른 사건에서⁷, 법원은 법정대표자 및 경영자 변경과 경영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해당 회사가 법정대표자 및 경영자 변경등기를 특정 인물로 변경하는 데 협조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의 재판 논리는, 공상등기 행위는 회사 내부 결의를 외부에 공시하는 행위이며, 만약 결의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결의에 기초한 공상등기 행위는 당연히 합법적인 기초를 결여한다는 데 있다. 고려 요소는 주로 법의 엄정성과 시장 거래의 안전을

⁶北京市大兴区人民法院(2024)京 0115 民初 5694 号民事判决。

⁷北京市第二中级人民法院(2024)京 02 民终 5147 号民事判决书。

강소월- 하자결의에 기초한 회사행위 효력 연구 — 사법판례를 중심으로
유지하고, 회사 등기 사항의 합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며, 하자결의로 인해 발생하는 비규범적 등기 행위가 시장 질서와 제 3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법원은 공상등기 사항과 관련된 경우 결의 하자에 대한 심사를 비교적 엄격하게 진행하며,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영향을 공상등기 행위에까지 확장하여 이를 무효로 판단한다.

사법재판에서 행위 효력 인정이 명확하게 언급되는 사례는 극히 소수이며, 대부분의 사건은 행위 효력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결의의 불성립, 취소가능 또는 무효 여부의 판단에 머무른다. 내부행위 영역에서 사법기관은 “결의 효력”과 “행위 효력”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경향을 보이며, 직접적으로 행위 효력에 대한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일정한 정도에서 행위 효력 문제에 대한 “회피”를 형성하고 있다.

2. 외부행위: 선의의 상대방 규칙 적용의 불통일

회사 하자결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외부행위와 관련된 사건에서, 사법재판은 통상 상대방의 주관적 상태를 행위 효력 인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즉, 상대방이 선의인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해당 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비교적 뚜렷한 불통일 현상이 존재한다.

첫째, 서로 다른 사건에서 “선의의 상대방”에 대한 인정 기준에 차이가 존재한다. 민법에서의 선의는 소극적 선의, 단순한 선의, 추정된 선의로 이해된다⁸. 그러나 상법 영역에서는 당사 주체가 법률행위를 수행할 때 그 구조가 더욱 복잡하다.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라 회사결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결정되고, 나아가 결의 사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이를 소집·주재하게 되며,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회사의 진정한 의사는

⁸李建伟：《公司决议的外部效力研究——〈民法典〉第 85 条法教义学分析》，载《法学评论》第 38 卷第 4 期(2020)，第 29 页。

강소월- 하자결의에 기초한 회사행위 효력 연구 — 사법판례를 중심으로
쉽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법상의 소극적·단순적·추정적 선의 기준을 그대로 상법상 주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민법과 비교할 때 상법에서의 선의 인정 기준은 더욱 엄격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심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상대방이 심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심사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사법실무에서는 아직 통일된 기준이 형성되지 않았다. 일부 법원은 형식적 심사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이모동과 면조회사 사이의 보증계약 분쟁 사건에서⁹, 법원은 원고 이모동이 채권자로서 피고 면조회사의 담보를 수령할 때 선의의 상대방으로서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담보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일부 법원은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회모회사, 희모돈회사 등 사이의 계약효력 확인 분쟁 사건에서¹⁰, 법원은 본 사건이 회사가 회사 주주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사안으로서, 피담보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에 서명한 것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대방인 회통회사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충분하고 신중한 주의의무를 명백히 소홀히 하였으며, 선의의 제 3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회통회사는 선의의 제 3 자로서 희모양회사에 보증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며, 희모양회사의 담보행위는 무효로 인정되었다.

셋째, 결의 내용이 법정 제한에 해당하는지 또는 회사 정관상의 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재판에서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외부행위 효력 인정에 혼란이 발생한다. 법정 결의에서의 심사의무에 관하여 「구민기요」 제 18 조는 채권자의 심사의무가 일반적으로 형식심사에

⁹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2022)沪 0115 民初 57756 号民事判决书。

¹⁰甘肃省酒泉市(地区)中级人民法院(2022)甘 09 民终 1634 号民事判决书。

강소월- 하자결의에 기초한 회사행위 효력 연구 — 사법판례를 중심으로
한정되며, 필요한 주의의무만을 이행하면 되고 과도하게 엄격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23 년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계약편
총칙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이하 “계약편 해석”) 제 20 조는 상대방의
심사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대표권에 법정 제한이 존재하는 모든 경우에
상대방은 합리적인 심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비록 상대방
심사의무의 적용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그 경계와 범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의정 제한에 해당하는 결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법정 제한과 동일한
수준의 심사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며, 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 「계약편 해석」 제 20 조 제 1 항은 법정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상대방이 합리적인 심사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 2 항은 의정 제한의
경우 상대방이 심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회사가 상대방이
선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정 제한에 대하여 심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민법학자와 상법학자 사이에 여전히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상법학자들은 상대방에게 회사 정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 거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거래의 안전성을 크게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법률은 정관의 비치와 공개를 요구하고 일정한 공개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정관을 조회하는 비용은 제한적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¹¹.

IV. 개선 경로

1. 내부행위 효력의 개선

회사 하자결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내부행위 효력에 관한 규범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회사 하자결의에 기초한 “경영관리행위”의

¹¹刘贵祥：《担保制度一般规则的新发展及其适用——以民法典担保制度解释为中心》，载《比较法研究》

강소월- 하자결의에 기초한 회사행위 효력 연구 — 사법판례를 중심으로

효력 체계를 구축할 때, 우선 결의 사항의 영향 정도에 따라 판단하고, 다음으로 행위의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회사 지배구조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회사결의의 본질에 따라 결의 내용은 자산 권익 사항과 조직 지배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된 재산 처분행위, 예컨대 이익 배분의 경우, 그 근거가 되는 결의에 효력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면 관련 재산 처분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신 「회사법」 제 211 조에 근거하여 주주에게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실무에서 비교적 높은 집행 가능성을 가진다. 후자는 회사 정관의 수정, 지배기구 구성원의 변경 등 회사 조직구조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 하자결의에 기초한 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 두 가지 차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기존 지배질서에 미치는 영향 정도이며, 둘째, 법률관계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다. 전자는 상업 실무를 통하여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후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법에 따라 주주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변경 결의를 형성하고, 해당 결의가 지분 구조 조정 및 고급관리인의 변경 등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미 공상등기기관에서 변경 등록이 완료되었으나 이후 결의가 불성립으로 확인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주주가 원래의 권리 상태로의 회복을 주장하는 경우, 등기 변경이 다수 이해관계자의 권리 조정과 관련되고, 또한 기존에 등기된 법정대표자가 이미 사망하여 사실 상태가 되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소송청구를 지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하자결의에 기초한 행위의 효력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회사 지배구조의 안정성 요구, 결의 절차의 적법성 기준 및 시효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차원적 가치 균형을 통하여 회사의 정상적 운영과 법질서 유지라는 이중적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회사가 행한 조직변경형 결의에 대하여는 이미 변경등기가

강소월- 하자결의에 기초한 회사행위 효력 연구 — 사법판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결의에 기초하여 이미 변경등기가 완료된 조직변경행위, 예컨대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등의 경우, 결의가 부정된 이후 회사는 회사 등기기관에 신청하여 변경등기를 취소하고 회사 상태를 변경 이전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거래 안전을 유지하고 선의의 제 3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기간 내 회사와 거래를 한 선의의 제 3 자가 등기 정보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수행한 거래행위는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회사의 증자 결의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으나, 이미 해당 하자결의에 기초하여 공상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기간 동안 회사와 선의의 채권자 사이에 형성된 채권채무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¹².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직변경행위, 예컨대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 등의 경우에는 결의가 부정된 후 해당 조직변경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회사는 결의 이전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관련 행위의 법적 결과는 회사 또는 관련 책임자가 부담하며, 예컨대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의 충실의무와 근면의무를 결합하여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동시에 사법적 인정 기준을 통일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명확한 근거 부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재판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외부행위 효력의 개선

회사 하자결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외부행위에 있어서는, 우선 법정 제한 결의와 의정 제한 결의의 외부적 차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법정 결의와 의정 결의는 표현 형식과 효력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법정 결의는 법률 조문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나며,

¹²徐银波：《法人依瑕疵决议所为行为之效力》，载《法学研究》第42卷第2期(2020)，第167页。

강소월- 하자결의에 기초한 회사행위 효력 연구 — 사법판례를 중심으로

그 효력은 법률의 강행규정에서 비롯되어 보편적 구속력을 가지며, 제 3 자는 통상 이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의정 결의는 회사 내부의 약정에서 비롯된다. 둘째, 법정 결의와 의정 결의는 상대방의 심사의무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법정 결의는 공시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 높은 수준의 심사의무를 요구하며, 상대방은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반면 의정 결의는 공시성이 약하여 상대방이 회사 내부의 약정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그 심사의무는 상대적으로 경감된다. 셋째, 법정 결의와 의정 결의는 법률적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법정 결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위가 무효로 될 수 있다. 예컨대 회사가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외 담보를 제공하여 신 「회사법」 제 15 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담보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¹³. 반면 의정 결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내부적 책임 추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외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컨대 상하이시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회사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규칙은 주주 내부의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가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대외적으로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회사는 지분양도계약에 따라 대가를 취득할 권리를 가지므로 단순히 회사에 부담만을 발생시키는 보증계약과는 구별되며, 따라서 해당 지분양도계약은 회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¹⁴.

회사결의가 법정 제한을 위반하여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해당 결의에 기초하여 대외적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예컨대 담보 제공, 지분 양도)의 효력을 직접 부정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이 “선의”인지 여부를 행위 효력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합리성을 가진다. 의정 제한을 위반한 결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외부행위의 효력은 상황에 따라

¹³最高人民法院(2021)最高法民再 232 号民事判决书。

¹⁴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2023)沪 0115 民初 9877 号民事判决书。

강소월- 하자결의에 기초한 회사행위 효력 연구 — 사법판례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회사의 의정 제한의 공시 상태는 일관되지 않다. 예컨대 중국에서 회사 정관은 단순한 비치 사항에 해당하며, 등기 여부에 대한 강제적 요구는 존재하지 않는다¹⁵. 회사의 의정 제한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회사가 특정 사항에 대하여 내부적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민법전」 제 171 조의 권한 초과 대표 제도를 원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의정 제한을 위반한 결의에 기초하여 수행한 외부행위에 대하여는 법정대표자가 상응하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반대로 회사가 의정 제한을 등기하여 공시함으로써 법정 공시효력을 가지는 경우, 예컨대 회사의 명칭, 등록자본 및 경영범위와 같은 사항은 모든 시장 주체가 공개된 경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회사에 의정 제한이 존재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수행한 경우,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선의의 상대방의 심사의무 범위를 한층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행위가 법정 제한에 해당하는지 또는 의정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회사결의 사항에 법정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심사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사의무는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단순히 표면적 서류만을 확인하는 형식적 심사와는 구별되며, 또한 엄격한 실질적 심사처럼 심층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의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상대방은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절차와 조건을 심사하는 것 외에도, 회사가 공시한 정관 및 관련 결의 문서를 열람하여야 하며, 회사 정관 중 거래 사항과 관련된 조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거래 질서를 유지할

¹⁵刘斌、张昕惠：《商事主体登记与备案之辨——兼评〈商事主体登记管理条例（草案）〉》，载《经贸法律评论》第2期(2021)，第116页。

강소월- 하자결의에 기초한 회사행위 효력 연구 — 사법판례를 중심으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과도한 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여 법적 보호와 자치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

회사결의에 의정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즉 회사 정관 또는 내부 지배
문서가 특정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심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해당 의정 제한의 공시 상태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의 의정 제한이 이미 등기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합리적인 심사의무를 부담한다. 거래 활동에서 상대방은 행위 주체가 권리
외관을 가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권리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컨대 직무상의 지위, 수권 문서 또는 기타
선의의 제 3 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신뢰를 형성하게 하는 권한의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사 외관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행위는
표현대표(대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거래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회사 의정 제한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심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회사 내부의 제한은 공시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이를 확인할 수 없다.

V. 결론

본 논문은 회사 하자결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위 효력 인정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였으며, 우리나라 회사결의 제도가 “이분법”에서
“삼분법”으로 전환된 제도적 배경을 정리하는 기초 위에서, 하자결의에 기초한
행위 효력 인정의 곤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사법실무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볼 때, 현재의 재판에서는 회사결의의 효력과 행위의 효력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특히 내부행위 영역에서는 법원이
결의의 불성립, 취소가능 또는 무효 여부의 판단에 머무르고, 해당 결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판단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강소월- 하자결의에 기초한 회사행위 효력 연구 — 사법판례를 중심으로
외부행위 영역에서는 사법재판이 일반적으로 선의의 상대방 규칙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인정 기준의 불통일, 심사의무
범위의 불명확성 및 법정 제한과 의정 제한의 구분 부족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재판 결과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기초로, 본 논문은 회사가 하자결의에 기초하여 수행한
행위의 효력 인정에 있어 유형화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내부행위에
있어서는 회사 자치와 지배구조 질서의 안정성을 핵심으로 하여, 결의 사항의
영향 정도 및 법률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는 전제 하에 행위 효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조직변경 사항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의 완료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 경로를 적용하여야 한다. 외부행위에 있어서는
거래 안전의 보호와 선의의 상대방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법정 제한과
의정 제한을 구분하는 전제 하에 상대방의 심사의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즉, 법정 제한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심사의무를
부담시키고, 공시되지 아니한 의정 제한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도한
심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 효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종합하면, 내부행위와 외부행위를 구분하는 효력 인정 기준을 구축하고,
선의의 상대방 심사의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현행 규범의
부족을 보완하고 사법재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회사 지배구조 질서와 거래 안전 간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

참고문헌

외국어문헌

[중국어]

<논문>

丁勇：《公司决议瑕疵立法的范式转换与体系重构》，载《法学研究》第 42 卷第 3 期，2020。

梁上上：《公司担保合同的相对人审查义务》，载《法学》第 3 期，2013。

李建伟：《公司决议的外部效力研究——〈民法典〉第 85 条法教义学分析》，载《法学评论》第 38 卷第 4 期，2020。

刘斌、张昕惠：《商事主体登记与备案之辨——兼评〈商事主体登记管理条例（草案）〉》，载《经贸法律评论》第 2 期，2021。

刘贵祥：《担保制度一般规则的新发展及其适用——以民法典担保制度解释为中心》，载《比较法研究》第 5 期，2021。

王滢：《公司决议行为的双阶构造及其效力评价模式》，载《当代法学》第 35 卷第 5 期，2021。

徐银波：《法人依瑕疵决议所为行为之效力》，载《法学研究》第 42 卷第 2 期，2020。

초 록

중국 회사법 체계에서 회사 하자결의에 관한 규범은 전통적인 유효와 무효의 이분법에서 불성립, 취소가능 및 무효의 삼분법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사법실무에 지속적인 이론적 기반과 규범적 지침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사법재판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하자결의에 기초한 행위의 효력 인정 문제는 점차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사법실무에서는 회사결의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행위의 효력 판단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일한 분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사법절차가 공전되고, 사법자원이 낭비되며, 분쟁의 실질적 해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 법제는 「민법전」 제 85 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2023 년 개정)」(이하 “신 회사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사법해석(4)」 제6조에서 거래 상대방의 주관적 상태를 기준으로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비거래적 회사결의에 기초한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회사가 하자결의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행위는 대외 담보 제공이나 지분 양도와 같은 외부행위뿐만 아니라 조직구조 조정 및 내부 지배구조 변경과 같은 내부행위도 포함한다. 이러한 내부행위와 외부행위는 효력 평가의 기준과 기능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므로,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회사 하자결의에 기초한 행위를 내부행위와 외부행위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효력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내부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자치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부행위에 대해서는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의의 상대방 보호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법정 제한과 정관상 제한을 구분하여

강소월- 하자결의에 기초한 회사행위 효력 연구 — 사법판례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심사의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하자결의, 결의 유형, 행위 효력, 회사법, 법정 제한, 의정 제한

Abstract

In the Chinese company law system, the rules on defective corporate resolutions have developed from the traditional dichotomy of validity and invalidity into a tripartite framework consisting of non-existence, revocability, and invalidity. This institutional shift has provided an important theoretical basis and normative guidance for judicial practice. However, as judicial experience has accumulated,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acts based on defective resolutions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Current judicial practice has not fully integrated the determination of defects in corporate resolutions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subsequent corporate acts. As a result, similar disputes are repeatedly brought before courts, judicial resources are wasted, and substantive dispute resolution is delayed. Existing legislation mainl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acts with reference to the subjective state of the transaction counterparty, while providing insufficient guidance for non-transactional internal acts based on defective resolutions.

This study distinguishes between internal acts and external acts performed by a company on the basis of defective resolutions and proposes differentiated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ir effectiveness. It argues that internal acts should be evaluated primarily in light of corporate autonomy and the stability of governance order, whereas external acts should be assessed with an emphasis on transaction security and the protection of bona fide counterparties. It is also necessary to distinguish statutory limitations from limitations based o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to clarify the scope of the counterparty's duty of review.

Keywords: defective resolution, types of resolutions, effectiveness of corporate acts, company law, statutory limitations, articles-based limitations